

#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8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및 「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」 제11조3항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등)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로,

나. '21. 12월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,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
- 「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」 제11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필요성

- 국가 자살예방정책 및 서울시 자살예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·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서울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
- 사업경험과 인력, 기술, 전문성, 사무처리 능력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사업개요

- 위탁기간 : '22.1.1. ~ '24.12.31.(3년)
- 위탁사무 :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
  -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기술지원
  - 자살예방 24시간 상담전화 운영,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
  - 자살예방매뉴얼 개발 및 보급,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 훈련
  - 성, 연령, 계층, 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수립,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·치료 및 사후관리
  -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
  -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계
  -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  -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

라. 소요예산 : 2,515,929천원 ('21년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(수탁기관 :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)

바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5층
- 시설규모 : 423.24㎡(128평)
- 주요시설 : 1577-0199 상담실, 유족프로그램실, 유족쉼터, 사무실 등

사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#### 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제1항, 제3항

-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방자살예방센터(이하 “자살예방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
#### 제11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
-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전문성, 인력,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####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제3호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 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#### 제6조(민간위탁 사무의 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2021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종합성과평가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 전영희 (☎ 2133-7547)